

항 고 장

항 고 인(고발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기 16(통인동, 참여연대)

전화 02-723-5302

피항고인(피고발인) 이 명 박(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위 피고발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9390호 사건에 대해 서
울중앙지방방검찰청 검사 정옥자는 2014.5.27자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
분 결정을 하였고, 위 고발인은 그 처분결과 통지서를 5월 30일에 수령한
바, 위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
합니다.

항 고 이 유

1. 원청 불기소 이유 요지

가. 원청의 주문에 따르면, 피의자 이명박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범죄인정 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등으로 각 처분하고, 피의자 김윤옥에 대해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은 각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처분을, 피의자 이시형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각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각 처분하였습니다.

나. 항고인은 위 원청의 주문 중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즉 피의자 이명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항고합니다. 아래에서 본 항고 대상사건의 특수성 및 각 항고이유를 살펴봅니다.

2. 본 항고대상사건의 특수성에 대하여

가. 본 항고대상사건은 이른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으로 지칭 되는 바, 그 개요는 “2011년 4월말경 고소외 김인종, 김태환이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20의 17 등 9필지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의자 이명박의

퇴임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저 부지 매입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명박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국가가 9억7200만 원을 더 지불하도록 하고 그만큼 피의자 이명박 등이 이득을 보게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것입니다.

나. 이미 이 사건 고발에 앞서 2011년 10월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2년 6월 8일에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그 후 수사미진에 대한 여론의 질타에 따라 특별검사(이광범)가 임명되어 재수사했고, 이광범 특검은 2012년 11월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을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이들은 1심에서부터 유죄가 선고되었고, 2013년 9월 27일에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고발외 김인종 등 실무자(행위자)들은 유죄확정판결되었으나, 정작 이들의 배임행위에 따라 이득을 본 피의자 이명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이는 이광범 특검조차도 당시 대통령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피의자 이명박 등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특검수사과정에서 이광범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영장까지 받아내었으나 청와대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수사미진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광범 특검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하였으며, 결국 특검은 이명박 등에 대하여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끝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 때문에 고발인은 피의자 이명박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5일, 이광범 특검의 공소사실과 김인종 전 쳐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토대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이명박에 대하여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수사’가 절실했습니다.

마. 그러나, 원청은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피의자 이명박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으며(제1항고이유), 고발외 김인종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들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편파수사 (제2항고이유)에 그쳤습니다.

3. 원청의 수사미진 (제1항고이유)

가. 앞서 살펴본대로 2011년 10월 민주당이 피의자 이명박 등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에 대한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피의자 이명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12년

6월 8일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원청은 이번 수사에서도 정작 핵심 피의자인 이명박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증거는 오로지 고발외 김인종, 김태환의 진술 뿐이며, 피의자 이시형, 같은 김윤옥의 특별검사수사자료와 불기소결정서 뿐입니다.

다. 원청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모든 의혹은 피의자 이명박에게 집중됩니다. 다른 피의자인 김윤옥, 이시형에 대해 각하, 공소권없음 등 형식적 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불기소한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시말해 피의자 김윤옥, 이시형에 대해 각하처분 등으로 면죄부를 주고 피의자 이명박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할 요량이라면 당연히 피의자 이명박을 직접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조사라도 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이명박이 2011년의 검찰수사와 2012년의 특검수사에서 조사받지 않은 것은 현직 대통령신분이라는 한계때문이었습니다.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피의자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청은 '특검에서 조사되었으나, 피의자 이명박에게 미쳐 확인하지 못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할 의무가 있었으나, 수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라. 고발장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특검 수사로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피의자 이명박은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해 고발외 김인

종 등으로부터 2010년 2월, 2011년 1월, 2011년 4월 등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2011년 1월에는 내곡동 토지 등 2곳의 후보지를 중점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2011년 4월에는 내곡동 토지를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로 결정했음을 보고받고 사저 부지를 이시형의 명의로 하라고 지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청은 마땅히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이명박을 조사했어야 합니다.

마. 이상 살펴본대로, 원청은 가장 기본적인 수사, 즉 피의자 이명박에 대한 수사없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 바, 이는 명백히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4. 원청의 편파수사(제2항고이유)

가. 원청은 피의자 이명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판단하면서, “김인종, 김태환이 경호부지와 사저부지로 물색한 여러 후보지 중에서 이 사건 토지 9필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피의자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위 9필지 중 3필지를 사저부지와 공유지분 형태로 매입하면서 사저부지로 할당한 463m^2 의 매매대금을 1,120,000,000원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그 후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매매대금 분담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에게 사저부지의 할당

면적, 매매대금 산정방법 및 분담금액 등에 관해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피의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은 원청의 판단은 한마디로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변명을 아무 근거없이 수용한 편파수사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피의자 이명박은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해 김인종 등으로부터 2010년 2월, 2011년 1월, 2011년 4월 등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고, 2011년 1월 내곡동 토지 등 2곳의 후보지를 중점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2011년 4월에는 내곡동 토지를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로 결정했음을 보고받았고, 심지어 사저 부지를 이시형의 명의로 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피의자 이명박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실무자이자 심부름꾼에 불과한 고발외 김인종과 김태환이 피의자 이명박에게 사저 부지의 할당 면적, 매매대금 산정 방법 및 분담금액 등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일련의 배임 행위, 즉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별 감정평가액을 조작하고, 이명박 일가의 사저 부지를 적정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배분하면서 국가 예산인 경호시설 매입비용 중 9억7,000만원을 사실상 사저 부지 매입비용으로 전용토록 만든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이미 유죄판결을

화정받은 김인종 등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피의자 이명박 등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편파수사의 결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 원청의 편파수사는 피의자 이명박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결론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즉, 피의자 이명박이 실권리자라면 이명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것이 되고, 반면 이시형이 실권리자라면 증여세포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세포탈은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원청은 이 사건 사저부지가 피의자 이명박의 퇴임후 거주할 사저이고, 더구나 경호부지까지 함께 매입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명박이 실권리자가 아니고, 아무런 자력도 없는 “이시형이 김윤옥 등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사저 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서둘러 결론내린 것도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법적인 공백(친고죄)을 이용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피의자에게 면죄부가 발부되었습니다.

마. 이상과 같이 이 사건은 사저매입과 관련하여 “피의자 이명박이 김인종과 김태환의 배임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피의자들과 김인종 등의 변명에만 의존하는 편파수사로 일관하였고, 그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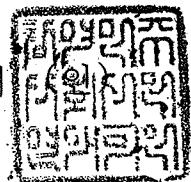
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는 허망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청(검사 정옥자)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경정하여, 재기 수사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 6. 26 .

위 고발인 참여연대



서울고등검찰청

귀중